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194

발의연월일: 2022. 6. 29.

발 의 자:정태호·김정호·한병도

송갑석 · 최기상 · 조승래

임종성 · 김상희 · 강선우

이성만 • 윤준병 의원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수급가구 내 미혼인 자녀(청년가구원)가 학업이나 취업 등을 이유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임차료에 대해 분리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청년 분리 지급 신청 제도는 청년층의 주거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현재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주 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음.

이에 청년가구원에 대한 임차료의 분리 지급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청년 분리 지급 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주거급여의 분리 지급) ①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가구원"이라 한다)가 취학·구 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와 분리하여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가구원의 범위 및 임차료의 분리 지급 기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2(주거급여의 분리 지급)
	①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가구원"이라 한다)
	가 취학·구직 등 대통령령 <u>으</u>
	로 정하는 사유로 부모와 거주
	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수급
	자와 분리하여 별도의 임차료
	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가구원의
	범위 및 임차료의 분리 지급
	<u>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u>
	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u> 정한다.</u>